



12018012610702400011075

고객번호: 20180126-0193741



“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” 구현

건강(장기요양)보험료 환급 신청 안내



사업장관리번호 : 91712318571

사업장 명 : 서울시청 공공재생과

대 표 자 : 박원순

단위사업장 명 : NONE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귀 사업장에서 납부하신 보험료 중 아래와 같이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이 발생되었음을 안내하오니 해당지사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보험료환급금은 체납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잔액을 지급하며, 자격유지 사업장은 익월 보험료 산정 전까지 미 신청시, 익월 보험료에 대체 후 차감·고지됩니다.

○ 신청방법 : 우편, 팩스(FAX : 02-3275-8347), 방문

○ 신청구비서류 (신청서 하단 개인(고유식별)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확인 요망)

▶ 신청서류(공통) :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지급신청서, 정산지불이행서

▶ 탈퇴(자격상실)사업장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채권양도양수서, 대표선임 근거서류 등

○ 지급방법 : 금융계좌입금(사업장 또는 법인통장에 한함) ○ 문 의 : ☎ 1577-1000

※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의하여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기한 내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. 시효완성일까지 청구하지 않는 경우,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청구권 소멸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▶ [건강·장기요양보험료] 환급금 내역 ◀

구분	환급발생일자	환급발생금액	납부대체액	지급예정금액	발생사유
건강보험료	2018.01.15	694,100	0	694,100	고지반환
(이자)	2018.01.15	270	0	270	
장기요양보험료	2018.01.15	46,340	0	46,340	고지반환
(이자)	2018.01.15	10	0	10	
계		740,720	0	740,720	

▶ 환급금 지급신청서 ◀

금융기관명(은행명)	계좌번호	예금주	전화번호

▶ 성 산 시 불 이 행 서 ◀

상기 본인은 아래의 개인(고유식별)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 또한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의 환급액에 대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정산 지급함은 물론, 추후 정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● 환급금수령액 :

● 주민등록번호 :

● 사 용 자 명 :

(인) * 법인 사업장 법인인감 날인

※ [개인(고유식별)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]

- 수집 및 이용목적 : 건강(장기요양)보험료 환급금의 지급
- 수집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장관리번호, 계좌번호 등
- 보유 및 이용기간 : 3년
-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의 법령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, 이용에 동의함 동의안함

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
(직인생략)